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대내·외 경쟁 및 선순환 유도, 민간 혁신 사례의 확산 등을 위해 도시활력지원과장,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인사혁신처 협의 완료

라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훈령　제2011호

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2항 중 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,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,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,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”을 “도시활력지원과장,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,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,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,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,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”으로 한다.

부　　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2조(개방형 직위의 지정) ① (생 략)	제72조(개방형 직위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**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,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,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,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**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.	② ---------- **도시활력지원과장,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,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,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,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,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** 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